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결정에 대한 의견청취안(성동구 용답동 230-4번지)

의안 번호	2350
----------	------

제출년월일 : 2021년 4월 2일
제출자 : 서울특별시

1. 제안이유

가. 역세권 청년주택은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한 역세권에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등 청년층의 주거난 해소를 위해 주변 시세보다 낮은 임대료로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계획임.

나. 역세권 청년주택의 상업지역으로의 용도지역 변경은 상업지역과 인접하는 경우 가능하며, 그에 따른 공공기여는 공공임대주택 등으로 제공하고 있음.

다. 이에 따라 장안평 일대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위치하며 일반 상업지역과 인접한 성동구 용답동 230-4번지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결정에 대해 의견청취를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결정(안)

구 분	면 적(m^2)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총계	523,805	-	523,805	장안평 일대 지구단위계획구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17,369	-	17,369	
제2종일반주거지역 (7층이하)	40,613	-	40,613	
제2종일반주거지역	67,838	-	67,838	
제3종일반주거지역	108,124	-	108,124	
준주거지역	97,978 (925.4)	감)925.4	97,052.6	역세권 청년주택 (용답동 230-4) 용도지역 변경
일반상업지역	119,478	증)925.4	120,403.4 (925.4)	
유통상업지역	72,405	-	72,405	

※ ()는 사업대상지(성동구 용답동 230-4번지) 면적임.

나. 도시관리계획사항

- 준주거지역, 장안평 일대 지구단위계획구역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및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7조
-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붙임 위치도 및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결정도 1부

※ 작성자 : 주택건축본부 주택공급과 박진수 (☎ 2133-6294)

붙임

위치도 및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결정도

☐ 위치도



☐ 위치도(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도)



□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결정도

○ 기 정



○ 변경

